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26720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 조종환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27.

판결 선고 2024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0,000,000원과 그 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 2024. 5. 25.부터, 10,000,000원에 대하여 2024. 6. 25.부터 각 2024. 9. 13.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이광열

별지